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8.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허 은 옥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74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8월 17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 2. 제안이유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해당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m <sup>2</sup> )	주요시설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명로2길 50(내발산동)	1205.42 (지하1~지상3)	·지하1층: 장난감도서관, 기계실 ·지상1층: 시간제보육실 ·지상2층: 실내놀이터, 열린육아방 ·지상3층: 상담실, 교육실 등

- 위탁사무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5년(2022. 1. 1. ~ 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따른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 소요예산(2021년 기준): 761,238천원

#### 나. 추진일정

- 2021년 9월: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년 10월: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위탁계약 체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51조의2, 같은법 시행령 26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부칙 제3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방식이 능률성, 전문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재위탁고자 하는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시군구 육아종합센터의 역할>

- 지역의 보육·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시·도센터 교육, 회의 등 참여 및 지원, 컨설팅 협력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 p481

- 검토결과,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의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제외한 그 밖의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규정에 따른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